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
2025. 7. 18(금) 10:20

제25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(행정안전국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5년도 제2회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45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5. 7. 14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7. 14.

2. 제안이유

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(안)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

가. 총 괄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 (A+B)	기정액			2회 추경안(B)	
			소계(A)	당초예산	1회추경		간주처리
계		846,374,946	784,903,378	764,927,053	8,070,788	11,905,537	61,471,568
일반회계		823,927,576	762,456,008	743,148,273	8,070,788	11,236,947	61,471,568
특별회계		22,447,370	22,447,370	21,778,780	-	668,590	-
	의료급여기금	634,164	634,164	634,164	-	-	-
	주차장	21,813,206	21,813,206	21,144,616	-	668,590	-

나. 일반회계

○ 세입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	기 정 액				2회추경 (안)
			소 계	당초예산	1회추경	간주처리	
계		823,927,576	762,456,008	743,148,273	8,070,788	11,236,947	61,471,568
자 체 재 원		160,569,945	160,569,945	160,462,188	107,757	0	0
	지 방 세	118,783,004	118,783,004	118,783,004	0	0	0
	세 외 수입	41,786,941	41,786,941	41,679,184	107,757	0	0
의 존 재 원		577,596,968	522,803,186	503,603,208	7,963,031	11,236,947	54,793,782
	지방교부세	14,521,000	14,521,000	11,692,000	2,829,000	0	0
	조정교부금등	153,148,559	153,148,559	147,183,691	3,778,074	2,186,794	0
	보 조 금	409,927,409	355,133,627	344,727,517	1,355,957	9,050,153	54,793,782
보 전 수 입 등		85,760,663	79,082,877	79,082,877	0	0	6,677,786
	순세계잉여금	78,774,786	72,097,000	72,097,000	0	0	6,677,786
	내 부 거래	6,985,877	6,985,877	6,985,877	0	0	0

○ 세출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	기 정 액				2회추경 (안)
			소 계	당초예산	1회추경	간주처리	
계		823,927,576	762,456,008	743,148,273	8,070,788	11,236,947	61,471,568
정 책 사 업		687,738,062	626,266,494	606,937,599	8,091,948	11,236,947	61,471,568
재 무 활 동		3,260,919	3,260,919	3,260,919	0	0	0
행 정 운 영 경 비		132,928,595	132,928,595	132,949,755	-21,160	0	0

4. 행정안전국 추경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세 부 사업명	사 업 개 요	최종예산액	기정액	2회추경(안)
합 계				60,928,777	0	60,928,777
1	자 행 처	민 생 회 복 소 비 쿠폰 지 급 (신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요내용 - 구민 전체(226,598명)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(차상위, 한부모가족 1,941명 / 기초생활수급자 15,110명) - 소득 수준별 맞춤형 소비쿠폰을 단계적 지급 • 사업내용 - 동지원 및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, 홍보비, 사무기기 임차비 등 -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및 상품권, 선불카드 발행수수료 • 추경사유 -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민생지원 대책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사업비 확보 	60,928,777	0	60,928,777

(단위 : 천원)

산출근거	최종예산(안)	기정예산	비교증감 (추경요구액)
계	60,928,777	0	60,928,777
101-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87,156	0	87,156
1)보조인력 인건비			
2)동 지원근무			
3)기본급 80,240원*6일*5주*25명 [국 45,135 시 9,027 구 6,018]	60,180	0	60,180
3)생활임금보전수당 419,760원*25명 [국 5,605 시 1,121 구 3,768]	10,494	0	10,494
2)구청 콜센터			
3)기본급 80,240원*6일*5주*5명	12,036	0	12,036
3)생활임금보전수당 419,760원*5명	2,099	0	2,099
2)보험료			
3)고용보험부담금 84,809,000원*1.80% [국 1,145 시 229 구 153]	1,527	0	1,527
3)산업재해보상보험금 84,809,000원*0.966% [국 615 시 123 구 82]	820	0	820

(단위 : 천원)

산출근거	최종예산(안)	기정예산	비교증감 (추경요구액)
201-01 사무관리비	101,181	0	101,181
1)일반수용비			
2)사무용품 500,000원*4월	2,000	0	2,000
2)신청서 인쇄 800,000원	800		800
2)홍보물 제작 4,380,000원 [국 3,285 시 657 구 438]	4,380	0	4,380
2)소비쿠폰 발행비용			
3)상품권 68,500,000원 [국 51,375 시 10,275 구 6,850]	68,500	0	68,500
3)선불카드 17,700,000원 [국 13,275 시 2,655 구 1,770]	17,700	0	17,700
1)임차료			
2)복합기 291,000원*11대 [국 2,400 시 480 구 321]	3,201	0	3,201
2)순번대기표 400,000원*11개소	4,400		4,400
2)정수기 50,000원*4월	200		200
201-02 공공운영비	3,440	0	3,440
1)공공요금 및 제세			
2)우편요금 430원*8,000매	3,440		3,440
203-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10,000	0	10,000
1)구 전담추진단 업무추진 300,000원*4월	1,200		1,200
1)동 현장추진반 업무추진 200,000원*4월*11개소	8,800		8,800
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(국고보조재원)	60,718,200	0	60,718,200
1)민생회복 소비쿠폰			
2)1차 38,058,400,000원 [국 28,543,800 시 5,708,760 구 3,805,840]	38,058,400	0	38,058,400
2)2차 22,659,800,000원 [국 16,994,850 시 3,398,970 구 2,265,980]	22,659,800	0	22,659,800
301-14 기타보상금	8,800	0	8,800
1)자원봉사자 활동비 10,000원*20일*44명	8,800	0	8,800

※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(안) : 61,471,568천원

(단위 : 천원)

합 계	민생회복소비쿠폰		G밸리상품권추가발행	예비비
61,471,568	60,928,777		215,270 (구비)	327,521 (구비)
	국비 75%	45,661,485		
	시비 15%	9,132,297		
	구비 10%	6,088,198		
	구 자체비용	46,797		

5. 검토의견

-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예산서(안) 9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정예산에서 총 609억 2,877만 7천원이 증액 되었음.
- 주요 편성 내역은
 - (자치행정과)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및 상품권, 선불카드 발행 수수료 및 동지원 및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, 홍보비 및 사무기기 임차비 등에 따른 예산 609억 2,877만 7천원 증액
- 행정안전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기 진작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새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예산 편성된 것으로,
-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충분한 안내를 통하여 주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손쉽게 신청하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 법령 1부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71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 8. 4.]